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의료개혁위원회』 의료개혁과제 선정

의료개혁위원회는 '96년 12월 23일 오후 제3차 의료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개혁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를 비롯하여 단기과제 10개, 중·장기과제 14개 등 총 24개 과제이며, 이중 단기과제는 금년 3월까지 소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발표될 예정이며, 중·장기과제는 금년 10월까지 개선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단기과제

- 포괄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
-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관리 방안
- 외국수학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 의료보험수가 결정절차 개선
- 의료보호 관리운영 개선
- 의료보험 관리운영 개선
- 보건의료산업의 관련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지원확대방안
- 한약재의 생산·유통구조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과제

- 포괄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
- 보건·의·약 행정조직의 효율화
- 보건의료인력 전문화 및 질적 관리 방안
-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적정화 방안
- 보험수가체계의 개편
- 보험급여체계의 개편
- 보험관리체계의 개편
- 보건의료산업 기술개발 지원의 확충
- 보건의료정보관리의 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 한(韓)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양(洋)·한(韓)의료의 상호교류 및 협진체계 구축방안
- 한(韓)의약분업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 생활보호지원 확대

-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
 -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을 90% 수준으로 향상함. 거택보호자는 1인 월 107,000원을 133,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보호자는 1인 월 92,000원을 108,000원으로 인상함.
-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 7,700명에 해산보호비 지원
 - '97년 신규사업으로 지원액은 1인 연 10만원임.
- 자녀학비지원범위 확대
 - 중학교,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 성적상위 30%를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생과 인문계 고교생 전체로 확대함. 수혜규모는 14만명에서 15만 1천명으로 증가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

□ 의사상자 보호수준 향상

- 보상금 지급
 -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최저임금액의 240배로 증액함으로 1인당 3,800만원이 7,6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됨. 「의사상자보호법」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 '97년 4월 시행 예정임.
- 의료보호적용시점 변경
 - 의사상자보호결정시부터를 의사상 행위시부터 적용하기로 함.

□ 장애인복지시책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을 20,708명에서 27,500명으로 확대함.
 - 지원단가는 정신지체의 경우 1인 32,000원을 40,000원으로, 기타장애는 1인 10,000원을 1인 15,000원으로 증액함.
- 생계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을 1, 2급 중증·중복장애인에서 1급 전원, 2급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15,000명에서 37,840명으로 증가함.
 - 지원단가도 1인 월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함.
- 의료비 지원대상을 1만 9천명에서 3만 8천명으로 확대함.
- 자녀교육비 지원범위 확대
 - 현행 중학교,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 30% 지원에서 중학교,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 전체로 확대함. 수혜규모가 2,474명에서 2,970명으로 증가되고,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
- 자립자금대여 한도 인상
 - 가구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함. 수혜규모는 700가구임.

□ 노인복지시책

- 노령수당 확대지급
 -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함.
 - 수당은 3~5만원에서 3만 5천~5만원으로 조정함.

- 노인취업기관(노인능력은행) 확대
 - 노후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사업을 확대하여 기관수는 60개소에서 70개소가 되며 운영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함.
- 경로당 지원 확대
 - 지원수는 23,000개소가 25,777개소로 늘어나며, 운영비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17만 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됨.
- 노인복지회관 확충: 신축 12개소
- 건강관리
 -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 치매전문요양시설 16개소, 치매전문병원 6개소를 확충함.
-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
 - 가정방문사업을 33개소에서 48개소, 주간보호사업을 10개소에서 25개소, 단기보호사업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함.

□ 아동복지시책

- 보육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1,100개소(255억원)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함. 즉,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신·증축 275개소, 공공기관,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등 부설 설치 825개소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258억원)함. 지원대상을 57,500명에서 7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은 법정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8,500명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고 기타 저소득층(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68,500명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반액 면제함.
- 요보호아동 그룹홈제도
 - '97년도에 신규로 5세대에 대해 시범실시(예산액: 247백만원)하고 2년간 시범사업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함.

□ 부녀복지시책

- 모자가정 지원
 - 아동양육비를 1인 월 12,000원에서 월 15,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 한도도 세대당 1,000만원에서 세대당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97년 지원규모는 250세대, 30억원임.

- 미혼모 예방 및 보호
 -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15만 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지원
 - 국고지원을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함.
-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함.
- 여성회관 신축
 - 5개소에 14억 7,400만원을 책정함.

□ 의료보험급여 확대

-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장
 -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함.
-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
 - '97년부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 등 장애인보장구를 보험급여로 인정함.
- 의료보호제도 내실화
 -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함.
-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
 - '97. 2. 1일부터 DRG시범 요양기관을 5개 질병군 25개 DRG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진료시 행위별 수가에 의한 진료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각 DRG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만 산정하게 됨(5개 질병군: 정상분만, 제왕절개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백내장수술).

□ 기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 저소득층 7만명에서 전 신생아 61만명으로 확대함.
- 귀순복한동포보호 근거법률 및 소관변경
 - 『귀순복한동포보호법』(보건복지부 소관)을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통일원 소관)로 변경하여 '97년 4월 시행 예정임.

- 시설납골당 설치 용자 지원
 - '97 신규사업으로 5억씩 6개소를 지원함(추진일정: '97년 4월).
- 장례식장 설치 용자지원 확대
 - 용자액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함(추진일정: '97년 4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기준 마련

- 정신보건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에 제정된 『정신보건법』과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동법시행령의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시행규칙(안)』을 마련, '96년 12월 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공포·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위주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퇴원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적응이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증상에 따라 적절한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은 시설에서는 환자들의 생활기술훈련, 문예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생활훈련과 도예, 목공, 편물 등 기술습득을 위한 작업훈련이 행하여지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독립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도 설치되게 되며, 또한 이 시설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환자들의 생활과 기술훈련 등을 지도하게 됨.
- 보건복지부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시설의 신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주기로 함.

□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 지역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은 관할 지역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정신보건자문의로 위촉하여 보건소의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료에 대한 지도·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 정신과전문의의 수를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정신과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70인당 1인으로 하되, 2002년 12월 31부터는 입원환자 60인당 1인으로 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정신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100인당 전문의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간호사는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정신과에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과 정신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을 두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한편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 100인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 시설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행할 방침임.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996. 12. 30일자로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관련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등 안전성 관리강화

- 의약품 제조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기나 포장을 사용토록 함.

- 청소년이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판매토록 함.
- 규격품이 아닌 한약재에 대하여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표기토록 함.

□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

-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수입)허가를 제한함.
-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성능, 전자파 장애, 방사선 안전성 자료 등을 추가함.
- 의료용구 제조업자는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 1등급 의료용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용구는 허가대신 신고로 갈음토록 함.
- 검사필증이 없는 의료용구의 유통을 금지토록 명문화 함.

□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 중대하지 않은 임상시험계획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임상시험을 중지하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고시내용을 법제화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에 대한 보고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시내용을 법제화함.
- 재심사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허가신청할 경우 부작용 사례 자료대신 외국의 자료 등 이에 준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첨부토록 함.
- 희귀의약품은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수집이 어려우므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유통광고관리 개선

- 한약재 규격화 정착을 위하여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한약재를 사용토록 함.
- CITES가입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시 CITES 협약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함.
- 의약품 도매상은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화장품 가격은 판매가를 기재토록 함.
- 지하철등 시설내 부착물 광고는 제품명, 제조회사, 효능·효과만을 광고토록 하던 것

-
- 을 대중광고 관리기준에 의하여 광고내용을 제한받도록 함.
 -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료용구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약사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 약사의 무자격자 조제·판매조장 행위 및 자율감시업무 방해 행위를 윤리기준위반행위로 지정함.
-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를 자격증으로 명칭 변경함.
- 규격품 한약재 제조관리자로 한약업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오지·벽지 등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보고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별로 함.
- 약사, 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약업사의 시·도간 이전을 허가토록 함.

□ 규제완화 및 민원서류 간소화

- 약사, 한약사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국립보건원장에게 하도록 하여 면허교부절차를 간소화 함.
- 약국개설등록 및 관리자 등록시 의료기관 개설시와 마찬가지로 진단서 첨부를 폐지함.
-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신청시 시설내역서를 폐지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도의 시설조사 기한을 1월 이내로 명시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
- 생약규격집품목, 표준제조기준 적합품목 등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의약품 신고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건부 허가시 시설구비 의무기한 및 KGMP 판정의무기한을 폐지하여 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함.

□ 행정처분기준 조정

- 처분횟수의 기산시점 등 가중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약사에 대한 처분을 의료인에 대한 처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함.
- 미생물 허용기준,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공포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토록 하는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을 12월 26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수대상 식품

-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회수대상 식품 등으로 정함.
 - －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유독·유해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이 함유되었거나 오염된 것
 -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염려가 있는 것
 -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설치
 - － 식품등의 회수명령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무원, 식품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둬.
- 회수명령
 - －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식품등으로 인체에 현저한 장애를 준 경우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수계획의 보고
 -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대상 식품등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고 식품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회수공표문
 - － 회수공표문에는 제품명, 제조일(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영업자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회수결과의 보고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유통·판매중인 회수대상 식품등이 더이상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는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대상 품목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1996. 12. 30일부터 의료기관의 CT 설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고 밝혔다.
-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도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설치, 활용도 제고, 의료비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CT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량이 보급되어 있고 의료보험 적용 등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설치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에 대한 설치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 이번 개선조치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행정쇄신위원회,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CT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6. 1.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성능이 부적합한 장비가 진료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96년 신약개발연구현황 및 연구소 운영실태

- 1996년 12월 현재 국내 신약개발 연구소에서 의약품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중인 과제는 총 368과제이며, 이 중에서 신약(신물질)개발연구는 198과제로 파악됨.
- 신물질개발연구과제 198과제중 물질탐색 및 합성단계 116과제, 전임상시험단계 72과제, 항균제 개발연구 4과제와 항암제 개발연구 2과제를 포함한 임상시험단계 10과제이며, 임상시험단계의 과제중 3과제가 외국의 임상시험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마케팅을 위한 의약품 개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제약기업 부설 및 민간출연연구소는 71개소로 연구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7개소이고, 박사급 연구원수는 총 300명으로 조사됨.
- 연구소 운영의 애로사항 및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고급연구인력 확보 및 정부지원 사업 수행·관리에 어려움과 신약관련 연구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능력의 취약, 신약 허가관련제도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국제공인 전임상/임상시험기관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신약개발지원기구(전임상/임상실시기관, 의약품헌정보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과제선정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로 연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약 개발관련 법적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키로 함.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는 1996년 12월 18일 오후 지난 6개월간의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함.
-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18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제개혁의 시범부처로 지정('96. 5. 10. ~ '98. 5. 9.)한 바 있음.

-
- 그동안 대부분의 규제개혁이 업무담당공무원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분야 각 개혁과제마다 민간인 전문가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56명으로 구성된 PC통신자문단에 제안창구를 개방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많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식품의 안전관리 기반조성, 불합리한 관행개선,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제고,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국민건강증진등 6개분야에 걸쳐 61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보건복지부소관 모든 법령중에서 1,139건의 규제법령조항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해소, 기업활동제약 요인해소 및 산하기관 또는 단체활동의 자율성 제고 등 3개분야 70건의 규제법령합리화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음.
 - 특히 지난 한해는 보건복지분야 업무 전반에 걸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과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 전직원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규제개혁 작업전반에 걸쳐 일반인과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올해에는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과 아울러 과제간 체계적 관계를 고려한 묶음(Package)단위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PC통신자문단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규제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연내에 추진상황을 일체 점검하여 단기과제는 '97년 3월까지 완료하고, 중장기과제는 '97년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